

#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1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2014. 10. .  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## 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의거 평창군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□ 제안근거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제3항

## □ 주요내용

### 1. 목적

- 방림농공단지의 오·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과 방류수역 수계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민간시설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.

### 2. 시설현황

- 시설위치 :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611-7번지
- 처리구역면적 : 61,593m<sup>2</sup>(방림농공단지)
- 시설용량 : 200m<sup>3</sup>/일
- 사 업 비 : 3,872백만원(국비 100%)

### 3. 위탁개요

- 관련법 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
- 위탁업체 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
- 위탁기간 : 2014. 11월 ~ 2017. 11월 (3년간)
- 위탁내용
  -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
  -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와 방출수의 수질관리
  - 원인자부담금 산정
- 위탁소요금액 : 연간 약180백만원

### 4. 관리방안의 장·단점 비교

직영관리	장점	○ 책임감 있는 운영가능
	단점	○ 평창군 조직 인력에 부담 ○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
위탁관리	장점	○ 위탁기관의 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 ○ 유지 보수 시 전문기술로 즉각적 대처 가능 ○ 상대적인 조직 인력 감축 효과
	단점	○ 위탁기간 만료로 업체 변경 시 계속성 결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결론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인력이 필요하나, 동계올림픽 추진 등을 위하여 평창군 조직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영은 어려움.</li> <li>- 공장폐수의 유입수와 방류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함.</li> </ul> </li> </ul>		

## 5. 향후 일정

- 위탁업체 선정(공개입찰) : 10월
- 시운전업체와 공동운영 및 인수인계 : 11월
- 위탁운영 : 2014. 11 ~ 2017. 11월(3년간)

## □ 참고자료

- 직영 및 위탁운영 원가계산서
- 관계법령
  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
  -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 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
[참고자료]

○ 직영 및 위탁운영 원가계산서

원가계산서(직영)

구 분		금 액	비 고
노 무 비( A )		6,186,920	
경 비 ( B )	보험료	460,042	
	전력비	1,300,000	
	수선유지비	450,000	
	시험분석비	800,000	
	약품비	500,000	
	슬러지처리비	700,000	
	기타경비	1,400,000	
	소 계	5,610,042	
	부가가치세	561,004	
	경 비 합 계	6,171,046	
순 운영 비( C )		12,357,966	A + B
일 반 관 리 비( D )		617,898	C x 5%
월간 운영비 계		12,975,864	C + D
연간 운영비 합계		155,710,368	월간 x 12월

## 원가계산서(위탁운영)

(단위:원)

구 분		엔지니어링노임	비 고	
고정비 (비정산)	노 무 비( A )	7,220,136		
	일반관리비( B )	361,006	A x 5%	
	이 윤( C )	758,114	(A+B) x 10%	
	소 계( D )	8,339,256	A+B+C	
	부가가치세( E )	833,925	D x 10%	
	고정비계 ( F )	9,173,181	D+ E	
변동비 (정산)	경비	전력비	1,300,000	
		수선유지비	450,000	
		시험분석비	800,000	
		약품비	500,000	
		슬러지처리비	700,000	
		기타경비	1,400,000	
		소 계 ( G )	5,150,000	
	부가가치세( H )	515,000	G x 10%	
	변 동 비 계( I )	5,665,000	G + H	
월간 운영비 계		14,838,181	F + I	
연간 운영비 합계		178,058,172	월간 x 12월	
연간손해배상공제료		2,000,000		
총 계		180,058,172		

## ○ 관계법령

###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

**제48조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)**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(이하 "원인자"라 한다)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#### 1. 한국환경공단

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(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

3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」

**제60조(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·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.

1.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사업(이하 "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"이라 한다)의 규모

2.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

3.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

4. 설치·운영에 따른 지급비용

5.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. <개정 2009.6.26., 2010.2.18., 2011.10.28., 2012.7.5.>

1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
2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

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(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)

5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을 한 자

5의2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)

6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

##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
**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**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

#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(안)

평창군수가 제출한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(안)을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.

부 서 별	안 건 명	운영방법
경제제육과	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	민간위탁

2014. 10.

평창군의회 의장